

第277回國會
(臨時會)

家畜傳染病豫防法 改正特別委員會會議錄

第 1 號

(임시회의록)

國會事務處

日 時 2008年8月21日(木)

場 所 農林水産食品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3.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4.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5.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제안의 건

審査된案件

1. 위원장 선임의 건 2
- 위원장(최인기) 인사 2
- 의사일정 상정의 건 2
2.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최인기·문학진·신낙균·정장선·강기정·이종걸·이낙연·송영길·김유정·김춘진·김재윤·조경태·최규성·김종률·안민석·이용섭·박주선·김영진 의원 발의) 3
3.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강기갑·곽정숙·권영길·변재일·안민석·이낙연·이시종·이정희·조배숙·최규성·홍희덕·김종률 의원 발의) 3
4.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류근찬 의원 대표발의)(류근찬·이진삼·임영호·권선택·박상돈·김창수·변웅전·심대평·김용구·김낙성·박선영·이영애·이명수·이회창·이재선·이상민 의원 발의) 3
5.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제안의 건(장윤석·이시종·박영선 위원 서면동의) 3

(보고)

(14시41분)

○수석전문위원 김인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8월 19일 제2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정수는 18인입니다. 그리고 그 활동기한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의결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년 8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동 위원회의 위원 선임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석하신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정영희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정영희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3분 개의)

○委員長職務代行 丁英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이상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職務代行 丁英姬 국회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45분)

○委員長職務代行 丁英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상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그동안 위원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해 오신 최인기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丁英姬 지금 김재운 위원님께서 최인기 위원님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인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인기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선임되신 최인기 위원장님께 사회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임되신 최인기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희 위원장직무대행, 최인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최인기) 인사

(14시48분)

○위원장 최인기 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남 나주 화순 출신 최인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계속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별위원회는 4월 18일날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협상을 체결한 이후로 많은 수의 국민들의 염려와 또 일부의 국론의 분열, 그리고 갈등들이 있어 왔었고, 또 정부를 규탄하면서 성난 목소리도 전국으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확산된 경험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이 사과하고 관계 각료를 경질하면서 추가협의를 추가협상을 통해서 한미 간 쇠고기협상을 보완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미흡하고 국회에서 다뤄달라는 국민의 여망이 매우 컸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서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공청회 절차 등을 거쳤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진행하는 것과 병행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3개 교섭단체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의 원칙에, 또 주요한 내용에 합의를 함으로써 그동안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돼 왔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제도를 크게 정비하게 됐다는 점 여러분께 보고 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교섭단체 세 분 원내대표가 합의에 이르기까지 옆에서 조언해 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 주신 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법률안 심사에는 농림식품부 장태평 장관께서 참석하고 계시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장태평 장관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4시50분)

○**위원장 최인기**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먼저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 3건의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동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인기** 예, 말씀하세요.

○**이윤석 위원** 존경하는 최인기 위원장님, 그리고 가축법특위 여야 위원님 여러분!

무안·신안 출신 무소속 이윤석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가축전염병예방방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야 합의에 의한 특위의 구성 목적은 미국산 쇠고기협상에 대한 국민의 건강권과 국민의 자존심을 되찾자는 의미에서 설립됐다고 할 것입니다. 즉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의 위험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특위의 구성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위험에 대한 견제장치를 위한 특위가 미국산 쇠고기를 예외시키는, 즉 제외시키는 법 개정예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여망과도 배치되고, 특위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었으며, 결국 우리 입법부는 물론이고 사법부 행정부가 한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입법부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여야의 졸속 합의, 사법부는 국제법 충돌, 그리고 행정부는 무역 분쟁을 내세우면서 결국 국민의 여망과는 엇나간 그런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인기** 이윤석 위원, 우선 이게 상정도 안 된 속에서 그런 내용을, 나중에 법안 의결할 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윤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인기** 잠시 남았으면 마저 마무리하십시오요.

○**이윤석 위원** 예, 마무리할 겁니다.

이번 여야의 합의는 우리 국민의 의사를 저버린,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 행정부 모두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입장에 손 들어주고 일부 미국 민간업자들에게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녹아 들어가는 정말 간도 쓸개도 없는, 우리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그런 부끄러운 선례를 남겼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힘없이 무너져 버린 쇠고기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훗날 우리나라를 지켜갈 후세들에게 반성의 계기로 남기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최인기·문학진·신낙균·정장선·강기정·이종걸·이낙연·송영길·김유정·김춘진·김재윤·조경태·최규성·김종률·안민석·이용섭·박주선·김영진 의원 발의)

3.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강기갑·곽정숙·권영길·변재일·안민석·이낙연·이시종·이정희·조배숙·최규성·홍희덕·김종률 의원 발의)

4.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일부개정법률안(류근찬 의원 대표발의)(류근찬·이진삼·임영호·권선택·박상돈·김창수·변용진·심대평·김용구·김낙성·박선영·이영애·이명수·이회창·이재선·이상민 의원 발의)

(14시54분)

○**위원장 최인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대체토론을 거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바 있기 때문에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제안의 건(장윤석·이시종·박영선 위원 서면동의)

○**위원장 최인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던 중에 여야가 지난 8월 19일 합의가 이루어진 점에 따라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나라당 장운석 위원, 민주당 이시종 위원, 선진과창조 모임의 박선영 위원님 등 세 분의 간사 위원께서 서면동의를 제출하셨습니다.

서면동의를 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장운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倫碩 委員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장운석 위원입니다.

서면동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광우병으로 불리는 소해면상뇌증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른바 인간광우병(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방기준과 수입위생조건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그 수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야 합의에 따라 특정위험물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과 특정위험물질을 수입금지 품목에 추가하고,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최초로 수입하거나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수입이 중단된 국가로부터 수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 그 의견을 듣는 절차로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포함한 위원회안을 성안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2008년 6월 5일 최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6월 5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14일 류근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수정·통합하여 성안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인기 장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서면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종률 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최인기 예, 김종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률 위원 지금 이 법률안이 상정되는 건가요? 상정되고 별도로 이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는 건가요?

○위원장 최인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김종률 위원 예.

우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우리 특위 전체 차원에서 토론한 적은 없는 셈이지요. 지금 그 시간이지요?

○위원장 최인기 그러니까 지난번에 법안심사소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고, 또 3당 간사 간에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방금 장운석 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처럼.

○김종률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특위 전체 차원에서 대체토론을 거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체토론을 다시 하자라는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자는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최인기 법안에 대한 의견은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김종률 위원 오늘 의결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위원장 최인기 예, 얘기하세요.

○이시종 위원 대체토론……

○위원장 최인기 대체토론은 했고, 제가 동의하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의견만 말씀하세요.

○김종률 위원 적어도 이 수정안 대안에 대해서는 이 특위가 다시 구성되어서 하는 것이니만큼 대체토론 자체는 아직 안 한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실질적인 논의들은 기왕에 1차 특위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다라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선 어렵게 여야가 가축법 개정안에 합의한 만큼 기본적으로 이 성안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

합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성과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그러나 이 수정안 위원회 대안이 이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이나 전체 토론을 제대로 거친 바가 없기 때문에 분명한 의견은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4개월간 어떤 촛불 정국에 나타난 국민의 기대, 여망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점을 지적을 분명히 해놓고, 기본적으로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선 정부 쪽 입장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제 오늘 정부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가축법 개정안이 법체계에 모순되고 위헌소지가 있다, 통상마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법부의 입장은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체계의 모순이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이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안 이전의 현행 가축법은 쇠고기수입위생조건을 고시로 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다시 국회가 모법이자 준거법인 가축법,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 법체계에 모순되거나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하위법, 그러니까 고시에 위임한 것을 상위법인 법률이 그 위임을 거둬들이고, 법률 그 자체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헌법이 법률로 정하게 할 사항, 입법사항을 법률보다 하위인 명령이나 규칙 고시 이런 형태로 정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있는 중요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명령이나 고시 같은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개정안에 심의받게 하자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위헌소지가 있다 이런 법제처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법률을 오해한 부분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에 국회의 동의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심의대상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헌법 제89조에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만 보더라도 국회의 심의는 헌법의 한정적인 열거사항이

아닌 점이 분명합니다.

국회가 법률로 심의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재량범위 내, 즉 헌법 제40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입법권에 속하는 국회의 권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또 정부가 이런 국회의 심의권이 마치 정부의 통상협상권한을 침해하거나 조약 체결권을 제약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국제규범의 일반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가축법 개정안이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심의권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서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 또한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 주권이나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포함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만큼 국회의 동의권도 아닌 심의권이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더더욱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다음에 이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분명히 적시하고자 합니다.

광우병 발생 국가로부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이것은 정부가 한미 간 추가협상 해서 정부고시 부칙에도 포함된 규정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번 가축법 개정안에는 명문화하지 못했습니다.

또 법에 SRM 특정광우병위험물질 확대 반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대로 입법 반영하지 못했고, 또 우리의 독특한 식습관을 고려해서 내장 전체를 SRM으로 규정하는 것도 하지 못했다는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광우병 발생할 때 일시 수입중단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은 가축법에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세계무역기구 SPS 위생검역협정에 의해서 이른바 긴급 세이프가드조치로서 당연히 우리에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금수 해제의 경우와 수입중단 후 재개하는 경우에 국회의 심의를 받게 하자는 조항은 그동안 법안심사소위에서 참 어렵게 고생해서 내놓은 성과고, 또 여야가 정치적으로 크게 서로 양보해서 합의한 결과로서 이번 특위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특위의 소기의 성과로 국회가 국민의 기대나 여망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다만, 여기서 가축법 개정안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들어놓은 성과가 좀 무력화되는, 제2조제1항 본문이 무력화시키는 그런 독소조항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이윤석 위원님도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입법부인 국회가 매우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을 특위위원으로서 의견을 남기고자 합니다.

가축법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은 개정 가축법이 현재 미국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예외를 인정한 내용입니다마는 이 부칙 한 조항으로 여러 가지 성과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부가 이 법을 집행하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집행·운영 과정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될 국회가 꼭 염두에 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개정안 합의를 계기로 해서 내용은 국민적 요구와 기대에는 현저히 못 미치는 아쉬운 내용입니다마는 오히려 이 법 운영과정에서 실효성과 또 국회가 행정부의 행정협상 이런 데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서 행정부나 국회가 각각의 역할에서 최소한의 역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인기** 이인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 장관께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5년간 수입이 금지되어 있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이인기 위원** 세계에서 쇠고기 수출입하는 국가 중에서 이렇게 법률로서 몇 년간 금지하는 그런 예외가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기 위원** 그럼 1년 3년 5년 이것은 어떤 기준인 것 같습니까, 입법의 의도가?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인기 위원** 그런데 장관이 앞으로 이 법에 대해서 집행 기능이 있으니까 장관의 뜻 소신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의 하나 만약의 경우에 국내산 고기가 광우병이 나타났다 그러면 5년간 국내 유통도 금지시켜야 됩니까? 외국에서 발생한 것은 5년 동안 수입이 금지된다, 그러면 국내에서 만약에 발생되면 5년간 유통이 금지됩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글썬요, 그런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검역절차에 관련된 문제라서요.

○**이인기 위원** 그런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에서 통상 내외생산물 동등의 원칙 이런 원칙이 있는데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인기 위원** 그다음에 법제처에서 심의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심의는 동의보다도 더 강한 의미다’ 이런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행법상 인사청문회를 할 때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와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같은 국무위원은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이인기 위원** 그 심의는 지속력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8월 19일날 입법하는 과정에서 문자 문리해석을 떠나서 입법의 의도가 만약에 이것을 ‘동의’로 하면 정부에 대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완화하기 위한 표현으로 ‘심의’로 했다, 그렇게 지금 실제 과정이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번 해석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인기 위원** 8월 19일날 여야 간에 합의를 볼 때 동의로 할 것인가 심의로 할 것인가 논쟁을 하면서 동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모순이 있다 3권분립의 모순이 있다 그렇게 해서 심의란 용어를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그래서 그 심의에 관하여는 강학상으로는 어떤 절차에는 의무적인 내용이 들어가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적인 것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와 법제처에서 해석을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인기 위원 농식품부에서도 발표해서 이 법안이 이러이런 점이 잘못되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점인지 설명해 주시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저희는 잘못됐다는 점보다도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려되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인기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아까 내용은 간사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인기 위원 통상마찰 우려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저희들이 지적은 했습니다.

○이인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논점이 조금 어긋납니다마는 광우병 전수검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한번 합시다. 특위 회의가 끝나니까요. 전수검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안전성과 앞으로 한우, 우리 쇠고기의 장래를 위해서 좋다 그런 내용인데 그 반대론은 전수검사를 함으로써 우리 한우가 불안하다는 걸 노출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전수검사를 하다가 2005년도 부터입니까? 줄여서 일정 조건하에서만 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되죠, 뭐. 그 정도만 해도.

유럽이나 외국의 경우에도 유럽연합국가도 30개월령 이상된 도축소와 24개월령 이상된 죽은 소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호주, 뉴질랜드 등 청정국가에서도 기립불능, 위험 높은 소에 대해서만 하고 있던 말입니다. 우리도 이 기회에, 가축법특위가 끝나고 정기국회, 9월 국회에 들어가 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국민들과 우리 한우 농민들에게 광우병 전수검사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한번 저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종 농민단체를 포함해서 여러 단체에서 광우병 전수검사를 하자는 서명 내지 법안을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야, 전수검사를 할 필요가 있지만 그 법안까지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 또 법안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전수검사를 필요한 일정 부분만 단계적으로 하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장관으로서 이 자리에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정말 존경하옵는 이인기 위원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광우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통제될 수 있는가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우병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과학적 연구결과에 의해 가지고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광우병 발생건수가 한 200건 정도로 낮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에 대한 어떤 현실적 위험성이 보건경제학적 의미라고 그럴까요, 그런 점에서는 전수검사를 해서 그런 비용을 그렇게 무한정 써야 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국민들에 대한 또 어떤 광우병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우병 전수검사는 굉장히 좀 무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다른 병들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병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피해를 봤고 위험성이 있는 그런 것들, 제가 여기서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병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완전히, 예를 들자면 우리가 먹는 물의 어떤 대장균 균수를 제로 상태로 만드는 그런 식의 과도한 경비를 지출하는 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포기하거나 그걸 생략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과학적으로 제도적으로 거의 완전하게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전수검사나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고 명백하게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 위원 끝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우도 OIE의 적어도 위험통제국가 정도는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어떤 심사평가의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는 앞으로 하게 됩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지금 하고 있

고요.

저희들이 한 2010년 정도에는 통제국가에 들어갈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인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인기 이인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방금 장윤석 위원이 제안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 찬성, 반대에 관련된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위원 말씀해 주시죠.

○박선영 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인기 위원님과 장관 사이에 오갔던 질의응답 과정에서 장관께서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어서요, 그에 대해서는 이 개정안 마련하는 데 참여했던 간사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심의와 동의의 차이에 대해서 심의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장관이 명확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지금 학자들 간에는 심의는 어떤 실질적인 규정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규정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행정입법권 관련해서 고시를 국회가 다시 심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제처도 그렇고 농림수산부도 의견이 지금 좀 반대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상 행정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서 범위와 한계를 정해서 위임을 하는 것이지 백지위임을 하는 그런 행정입법권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이 다소 좀 생경하게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위헌적인 소지를 가져오거나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에는 행정입법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그러한 입법형성의 자유원칙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법에서 범위와 한계를 정해서 이 부분은 고시를 다 할 수 있지만 불가피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은 국회의 사전심의를 거쳐라 하는 예외적인 조항으로 보면 조화로운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인기 박준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 일단 저는 우리 여야 3당의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우

리가 마지막 이 법률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시간에 좀 명확히 해 둘 것은 이미 존경하는 우리 김종률 위원님과 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법안에서 국회가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우리가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에, 일정한 경우에 정부의 협상이나 이런 것에 국회의 통제를 가하려는 장치로서 마련한 것이 바로 심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대체토론부터 소위활동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안을 검토했는데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야당에서 한 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 그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안한 것은 사전보고만 하고 지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우리가 절충안으로 마련한 것이 심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보고, 심의 그다음에 사전동의, 국회의 동의 그래서 저희는 국회의 동의는 헌법의 명백한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이 명백하므로 안 된다는 의견이었고 우리 야당 측에서는 사전보고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정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 심의인데 지금 국회법 제93조에 보면 심의라는 것은 안전보고, 질의답변, 토론 그리고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 의결을 거친다는 것은 찬반투표를 해서 심의기구 즉, 국회의 심의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게 되면 거기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을 전제로 해서 법제처에서는 사전동의보다 더 엄격한 통제를 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국회법이나 우리 헌법상에 있는 국회동의보다 심의라는 것이 더 엄격한 통제가 되고 부결 결과가 나오면 동의가 아닌 그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통제를 한다는 것은 기존에 헌법과 국회법에 있는 사전동의라는 의미보다 강력한 의미의 심의라는 말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법해석과는 좀 거리가 떨어진 해석이기 때문에 이번 우리 마지막 토의시간에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가령 국회가 심의해서 부결을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효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그건 존경하는 이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구속력은 있을지 몰라도 법률적인 의미의 구속력이 있다고 해석하면 그건 동의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은 기우에 불과하고, 그러면 과연 국회의 통제가 적절한가, 헌법적인 어떤 위헌과 행정부의 권한과 국회의 권한을 놓고 봤을 때 그 부분에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국민의 의사의 합의로 국회에서 결정한다면 그것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통상무역국가로서 70% 이상을 통상에 의존하고 통상협상이 조약 이상의 중요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부분, 특히 이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려고 하는 이 장치, 이걸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그만큼 통상과 협상, 국제간의 무역협상이 우리 국가의 명운과 직결되고, 이번에도 촛불집회로 해서 한 몇 달 동안 나라가 뒤흔드는 그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만큼 더 이상 밀실에서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관련 부처와 조용하게 은밀하게 추진해야 될 것 같아 떠나서 최소한의 통제장치는 마련해야 된다는 국민적인 합의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수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인기 김중률 위원 또 말씀이 계세요?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깐 명확히 좀 해야 될 것입니다. 박준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개정안에 나와 있듯이 국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심의는 반드시 국회의 어떤 심의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절차적인 요건이고 그러나 심의결과, 토론하고 논의된 것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되고 참고해야 되겠지만 과연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강학상의 심의

의 의미를 그대로 이해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법으로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에 대해서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그 행위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학적으로도 일반적으로도 인정이 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절차적 요건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와 관련해서 통상마찰 가능성 부분을 농식품부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통상마찰 가능성이 있는 법을 국회가 만들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 주장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 놓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침 나와 계시니까 그 부분을 적시를 해야 되는데 정부는 아마 캐나다 이런 나라들과, 미국과 같은 광우병 통제국 지위에 있는 나라들과의 마찰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제규범의 일반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국회가 법률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입법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 특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 의결이 되어서 법률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 하위법, 지금 정부 고시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축법이 모범이고 근거법이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김중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준거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하위법인 고시가 상위법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위생조건을 앞으로 정해야 되는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예.

○김중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법체계에 맞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또 실제로 비엔나조약에도 보면 각국의 이런 통상협정, 위생검역협정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국내에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조약 수준이 아닌 통상협정의 경우에는 그런 통상협정 결과가 자국의 실정법, 법률에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그 협정의 취소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엔나조약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법적인 효력이 있는 일반 국제규범입니다. 그 점을 간과하고 있고.

특히 정부가 자꾸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도 간단하게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국제 기준인 OIE 기

준을 지키지 않았고 또 미국과 추가협상에서 국회 심의 조건을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국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OIE상의 SRM 규정, 이른바 OIE 기준은 무역거래를 금지하는 필요 최소한의 금지 기준입니다. OIE 기준에 SRM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모두 거래가 허용된다는 적극적인 허용 규정이 아닙니다. 쇠고기를 수입하는 각국은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OIE 기준을 참고하되 각국 자국 국민의 식습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반영해서 추가로 SRM을 설정하는 입법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OIE 기준 자체가 2004년도에 어떤,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또 그 이후에 많은 과학적인 새로운 근거들이 학계에 보고되고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또 더구나 OIE 기준 자체가 국제법적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권고적 효력을 갖고 있는 참고사항이라는 점도 정부의 그런 의견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OIE 기준에 교역이 금지되어 있는 SRM을 수입이 허용되는 수입위생조건으로 정할 때 그것이 오히려 OIE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OIE 기준은 교역이 금지되는 필요 최소한의 금지규정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해석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인기**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식품부장관께서는 아까 심의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원내대표 간 협의 과정에서 박선영 위원님 말씀이 계셨듯이 정리를 하면 그 결과에 구속력은 없으나 절차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국무회의 심의는 생략하면 정부가 법안이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없는 절차규정이지만 그와 반대로 대통령이 결심하면 의결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고, 절차가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 어떻게 심의를 받느냐 하는 그 문제 제기가 일부 언론에 있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똑같은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지금 국회의 심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는 그 두 가지를 거쳐야 된다는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김종률 위원, 박선영 위원, 이인기 위원, 또 박준선 위원, 전부 말씀을 하였고, 다만 말씀하신 취지로 보아서 장윤석 위원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기보다는 찬성하시면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발언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안 계시기 때문에……

○**김종률 위원** 잠깐만요. 지금 표결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인기** 아니,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하려고 그러합니다.

장윤석 위원이 설명한 것은 제안 법률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3당 간사들 합의사항에서 방금 장윤석 위원이 설명한 내용 이외에 그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제안했었던 관리수의사제도와 관련된 조항을 작은 문제이지만 보완하는 내용으로 함께 포함해서 여러분께 배부가 되었습니다.

취지를 보면 관리수의사의 업무가 확대되는데 실질적인 관리수의사를 두는 근거가 아마 법에 없어서 앞으로 식품위생 관리에 농식품부로서는 크게 필요로 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포함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 안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과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 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률 위원** 법률안을 의결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인기** 의결하려고 합니다.

○**김종률 위원** 저는 좀더 심도있는 심사 이런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무슨 소위 심사 이런 것을 회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의결하게 되면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분명히 합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인기** 반대의견을 표시하시겠습니까, 김종률 위원?

○**김종률 위원** 예.

○**이인기 위원** 저도 5년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과학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우리 국민

들의 법 감정을 다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5년이라는 기간이 과연 우리 국민 다수의 감정과 맞느냐, 그리고 우리 국내 축산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과연 그것이 옳느냐, 과학적으로 5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슨 검증을 거쳤는지 그런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인기 알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5년이라고 하는 것은 98년도에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5개국과 함께 만들 때 농림부가 광우병 발생 국가로부터 5년간 수입을 금지하도록 한 그런 규정이 있었고, 또 광우병 발생 국가로부터 5년 정도 하는 것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미국의 이행시기로 봐서 2년 정도 경과하면 신뢰 회복의 기간과 합치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참고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부가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이 안에 대해서는 세 교섭단체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사안입니다. 합의한 사안이어서 위원장으로서 가급적 전원 찬성의견으로 의결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반대의견을 표시하신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표결에 갈 수밖에 없습니까. 표결을 하는 데 대해 여러분 다른 의견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인기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98년도 하고 2008년도하고는 지금 여건도 많이 변했고, 또 그 당시 무렵에 광우병 발생의 빈도하고 지금 하고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사료의 청정화 이런 측면에서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98년도의 5년 규정을 지금 꼭 정해야 된다는 것에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인기 일치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과거의 전례가 있었다 하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일표 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3당이 합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장님도 되도록이면 표결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두 분께서 반대의견을 하시고 계시니까 그냥 의견을 첨부해서 표결 없이 하시면 어떤지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위원장 최인기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 여러분 의견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의사 결정 방법에 대해서 참고로 의견이 계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을 달아서 어느 어느 위원께서 그런 문제를 지적했다는 것을 표시하고 통과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의견 말씀하시지요.

○박준선 위원 존경하는 이인기 위원님 말씀의 취지가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그리고 법안을 토의하다 보면 자기 본인의 의사가 끝까지 관철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일부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3당의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견을 첨부해서, 그리고 그 정도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에는 안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종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인기 예, 말씀하세요.

○김종률 위원 반대의견을 개진한 위원의 입장에서 통상 최종 법안을 전체위원회에서 의결할 때는 분명히 반대의견이 있으면 표결을 하는 것이 국회법에 정한 원칙과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대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제가 표결에서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3당이 어렵게 합의한 정치적 합의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을 해 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을 소수의견으로 달아서 표시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법에 정한 의결에 관련된 규정하고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시간 걸릴 것이 아니라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인기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방금 김종률 위원 말씀이 표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는 전체위원회에서 합의가 되면 그 표결방식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김종률 위원은 표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계속 고수하고 계시니까, 아니면 위원회 대안으로 표시하고 어느 어느 위원께서 그런 문제를 지적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김종률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법안심사에 관한 자기의 독자적인 입장을 필요하면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인기 좋습니다.

○홍일표 위원 소신을 표시하는 것이니까 소수의견으로 달면 거기에 분명히 반대의견이 첨부되는 것이니까 그것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우리가 의사를 합치는 방법은 여기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김종률 위원**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의 그런 방법도 위원회에서 결의한 경우가 있는데 이 법안은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법안이고 또 우리 헌정사에 기록으로 남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관한 국민의 요구나 기대를 반영하기에는 현저하게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홍일표 위원** 사실 심정적으로 따지면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수두룩한데……

○**김종률 위원** 다른 위원의 표결 권한·요구를 존중하고 그런 말씀을 개진하실 수는 있지만 다른 위원이 표결을 요구할 때 그것을 소수의견으로 달아서 의견 표시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일표 위원** 아니, 합의 방법은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인기 위원** 위원장님, 저하고 김종률 위원님 하고는 반대하는 각도와 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법안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3년이나 5년 지나고 나면 이 법안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 아무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국회 속기록상에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차후에 이 법을 개정할 때 오늘 이 회의한 내용이 나중에 검토 자료로 올라온다고 보여집니다. 또 저하고 방향도 다릅니다, 서로.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표시해 주시지요.

○**위원장 최인기** 그러니까 방향은 다른데 반대……

○**이인기 위원** 아니 그런데 특위의 안을…… 제가 짧은 의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법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최인기** 그렇습니다. 법안은 물론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법안이 많은 것은 아니니까.

○**이시종 위원** 반대 개념이 소수의견을 달아서 반대하는 것도 반대에 들어가니까, 기록에 남으니까 표결을 안 하더라도, 표결을 해서 반대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표결을 안 하더라도 소수의견에 이름을 박아서, 이름을 적어서 반대의견을 게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두 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수의견에서 성함을 분명히

적시를 하고—반대했다는—그러고서 표결 없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최인기** 자, 그러면……

○**이시종 위원** 반대의사는 분명히 달고……

○**위원장 최인기** 김종률 위원은 끝까지 표결을 가자는 것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금방 이시종 위원께서 반대의사를 표시하셨던 분의 이름을 적시하고 저희 위원회 대안 전체로 의결을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 3당이 정치적으로 합의한 것을 존중합니다만 이 법에 대해서 특위 위원으로서 분명히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단순하게 소수의견으로 기록하고 전체회의에서 반대 없이 통과된다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인기**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도 같습니다?

○**이인기 위원** 저는 이런 논쟁이 결국은 4월, 5월, 6월 이렇게 거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줬느냐, 또 우리 한국 농민들에게 앞으로 생활에 어떤 이익을 줬느냐, 또 대한민국의 치안의 확보에서 무슨 도움이 됐느냐…… 저는 분명히 소신껏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반대의사 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인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표결을 요구하시고 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본 법률안에 대해서 찬반 의사를 물어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열한 분이시고 반대하시는 분이 두 분이십니다, 열세 분 중에서.

따라서 이번 의사일정 제2항~제4항까지 3건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제안의 건에 대해서는 장윤석 위원이 설명한 내용,

서면동의 내용을 포함해서 추가 합의사항과 함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방법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14일로 시한이 종료가 됐습니다마는 국민적 여망을 반영하기 위한 정치적 그리고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서 특위 시한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소기의, 개정이라고 하는 당초 특위 구성된 목적을 달성토록 협력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30개월령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대해서 국회의 통제권을 확보하고 또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에 일시적인 중단과 또 국회의 심의에 의해서 재개할 수 있도록 입법부의 통제장치를 확보하는 등 나름대로 국민의 건강권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최선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국회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또 일부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 중에는 많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아직도 국민 건강권을 확고히 확보하고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불안을 완전히 일소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국회에서 앞으로 꾸준히 논의와 또 토론을 거쳐서 합리적인 국민의 건강권이 확보되는 가축전염병예방방법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애써 주신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끝으로 본 법안의 우리 특별위원회 의결을 계기로 해서 농수산식품부장관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장관께서 간략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존경하는 최인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와 관련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가축전염병예방방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축전염병예방방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은 매우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최인기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정부는 가축전염병예방방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의 기관보고, 대체토론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가축전염병예방방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국제법과 조화되어야 하며 기존의 다른 국과 합의된 수입위생조건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명백하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 내용 중 일부는 법 집행상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는 가축전염병예방방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들의 건강위생과 식품안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인기** 농식품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수정 문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 대체토론과 법안심사소위원회 활동 등 열심히 해 주셔서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는, 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차선을 택한, 그런 데 노력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농식품부장관께서 출석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